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. 6. 18 선고 2019가합5117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3. C

4. D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

담당변호사 권영규, 오충현

피고E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

담당변호사 이성철

변론 종결2020. 5. 21.

판결 선고2020. 6. 18.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들에게, 각 70,671,77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

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대구 달성군 F 답 1,792m² 1) 중 각 317/1438 지분, G 답 509m² 중 각 1/4 지분에 관하여 각 2018. 11. 14. 증여2)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들의 관계

원고들과 망 H(2019. 1. 12. 사망)은 I과 J의 자녀들이고, 피고는 망 H의 처이다.

나. 소유권의 이전 등

아래 표에 기재된 각 부동산(지분 포함, 이하 순번에 따라 '제○번 부동산'으로 특정한다)은 I의 소유였다가, 그 중 아래 제1 내지 5, 8번 각 부동산(이하 이를 통틀어 칭할 때는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'등기접수일자'란 기재 일시에 '증여일자'란 기재 일시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H이 사망하자 2019. 1. 28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. 12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1	대구 달성군 K 중 640/658 지분	답	600평	2003.8.26.	2003.8.26.
2	대구 달성군 L 중 105/390 지분	대지	1,289m ²	2001.3.2.	2001.2.28.
3	대구 달성군 M	대지	432m ²	2001.3.2.	2001.2.28.
4	대구 달성군 N 중 634/719 지분	답	1,792m ²	2003.9.22.	2003.9.20.
5	대구 달성군 G	답	509m ²	2003.9.22.	2003.9.20.
6	대구 달성군 ○ 중 505/797 지분	하천	797 m ²	-	-
7	대구 달성군 P	답	165m ²	-	-
8	대구 달성군 Q	답	3,385m ²	2003.9.22.	2003.9.20.

다. 각서 작성

H은 2018. 11. 24. 원고들, I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'N, F. O, P 약 900평 땅을 원고들에게 공정할 것을 약속함'이라고 기재된 각서(이하 '이 사건 각서'라 한다)를 작성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들의 주장

H과 원고들은 2018. 11. 24. 한자리에 모여 부친인 I의 재산이었으나 H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향후 I의 사망시 상속될 재산인 제1 내지 8번 부동산을 형제자매들 간에 협의하여 재분배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(화해계약)을 하였다.

제1 내지 8번 부동산 약 2,800평 중 원고들 4명의 몫으로 1인당 약 400평씩 합계 1,600평을 나누어 주고, 나머지는 장남인 H의 몫으로 한다.

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① 제4 내지 7번 부동산 약 922평은 원고들 몫으로 하기로 하여, 그 중 H 명의로 되어 있는 제4, 5번 부동산은 원고들에게 각 1/4 지분씩 소유권을 이전하고, I 명의로 되어 있는 제6, 7번 부동산은 향후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H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. ② H 명의로 되어 있는 제1 내지 3번 부동산은 조속히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 중 원고들 몫인 1,600평에서 위 ①항 기재 922평을 제외한 약 678평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들에게 1/4씩 균분하여 나누어준다. ③ 제8번 부동산 약 1,024평은 H의 몫으로 한다.

따라서 피고는 H의 상속인으로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, 제1 내지 3번 기재 부동산의 공시지가 기준 가액 342,601,743원에서 원고들의 몫인 678평에 해당하는 282,687,082원의 1/4 균분액인 각 70,671,770원(이하 '이 사건 약정금'이라 한다)을 각 지급하고, 제4, 5번 부동산 중 각 1/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'라 한다)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구체적인 판단

1)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, 제1 내지 3번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중 678평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원고들에게 균분하여 나누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

보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(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7다2986 판결 등 참조).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에는 제4 내지 7번 부동산을 '공증한다'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소유권 이전에 관한 처분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, 녹취록(갑 제6호증)의 기재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, 즉 H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후 '이래가는 안 된데이, 공증받아야 된데이'라고 진술한 사실 및 H이 원고들의 말에 수동적으로 대답하면서 원고들이 불러주는대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,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제6, 7번 부동산은 I의 소유여서 그 소유권 이전에 I의 추가적인 의사표시 또는 절차적 협조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, 이 사건 각서는 H이 원고들에 대하여 추후 제4 내지 7번 부동산 관련 형제들 간의 재산분배에 관한 최종적인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다음 이를 '공증'하겠다는 의사를 정리한 문서일 뿐 곧바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처분문서라고 볼 수 없고,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한편, 위 녹취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, H이 장남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은 것에 대해 미안해하면서 원고들의 요구대로 이를 분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,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한 사실만으로 H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 위지현

판사 이준석

판사 강수희

1)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1,791㎡'라고 기재되어 있으나, 부동산등기부 기재 및 변론

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, 1,792m²의 오기로 보인다.

2) 원고는 편의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특정하기 위해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것일뿐 실제로는
화해계약이 등기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.